

A Study on the Language and Literature Division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Nam, Tae Woo

〈ABSTRACT〉

In this study, Two divisions(language and literature) in schemes of the DDC are discussed. And the adaptation of these divisions to the minor or oriential countries are seggested.

In spite of the continuous study and revision of the experts, the frameworks of these systems are still kept unchanged. Only their subdivisions, reflecting those developments in the academic world are developed and detailed more sophisticatedly. Of those subdivisions in DDC, especially the two subdivisions of language and literature are seriously unbalanced. The two divisions give the attention too much to the Western including the English, Deutsch and French.

Relatively the languages and literatures of the other nations are treated lightly. It results more problems to the Oriental and the minor nations. So, the libraries of these nations should modify the schedules and develop the subdivisions items of the local emphasis.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DDC system in the languages and literatures are clarified and the problems occurring from unbalanced allocation of the classed items are examined.

독일목록규칙의 기본기입선정에 관한 연구

金 泰 樹^{*}

〈목 차〉

1. 서론
2. 독일목록규칙에서의 기본기입 선정법
3. 저자기본기입법과 서명기본기입법의 비교분석
4. 결론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서지적 정리방법의 표준화의 요구에 따라 각국의 목록규칙을 조정 내지 통일하려는 시도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표준화를 모색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크게 두가지 부문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하나는 1961년 국제도서관협회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IFLA)이 목록의 기입원칙에 관한 국제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ICCP)에서 목록원칙규범(statement of principles)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목록사의 분수령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목록작업에 전산화가 도입되는 1970년대에 와서 국제표준서지기술법(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ISBD)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ISBD는 각국이 생산하는 목록에서 기술요소와 그 기재순서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술(記述)의 표준화란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그러나 이러한 기입원칙의 제정과 기술의 표준화라는 정리방법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지적 정리법은 방법론에서는 국제성이 강하면서도, 실제면에서는 지역성(locality)이 크게 작용하는 학문”¹⁾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리방법을 규정한 목록규칙도 언어권이나 문화권 또는 이용자의 검색관습에 따라 상이한 이론과 구조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독일의 프러시아규칙(*Instruktionen fur die alphabetischen Kataloge der preussischen Bibliotheken; Prussian Instructions; PI*)은 독어권내의 종합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고려에서 태동한 것으로 그 기저에는 18세기 아래 긴 서명을 간략하게 기입하던 전통적 관행을 반영한 규칙²⁾이고 한편 영미의 목록규칙은 저자성에 기초한 영국과 미국의 목록관행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들 규칙은 그 전개과정에서 독자적인 이론과 전통으로 각각 발전해 왔다.

국내에서도 이상과 같은 목록원칙의 제정과 서지기술법의 표준화의 진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으로 ISBD(M)에 대한 역주본이 1976년에 출간되었다.³⁾ 그런데 ISBD의 수용은 저자를 앞세워 기입하는 저자기본기입과 서명을 앞세워 기입하는 서명기본기입과의 논쟁에서 “동양의 전통적 목록법이었던 서명선기입법의 승리”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1)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의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도협월보, 제16권 제10호, 1975. p.9
- 2) Rudolf Lais,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Development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ternational Cataloguing, vol.12, no.3, 1983. p. 27
- 3)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SBD(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First Standard edition.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4. 국연판: 국제표주서지기술법(단행본용).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제정; 리재철, 현규섭 역주. 표준 1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6
- 4) 국제표준서지기술법(단행본용),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제정 리재철, 현규섭 역주, p.5의 역자의 말

결국 지금까지 목록기입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기본기입 없이도 완전한 저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목록기입방식의 발전과정에서 독일목록규칙에서 규정한 기본기입 선정법을 고찰하고 목록의 기능이란 측면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서명 기입과 비교함으로써, 실제 검색요소로서의 기본기입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한계

독일목록규칙 중 아래의 두 규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 1) Instruktionen fur die alphabetischen Kataloge der preussischen Bibliotheken vom 10. Mai 1899, zweite Ausgabe. unveränderter Nachdruck, in der Fassung vom 10. August 1908
(본 논문의 논설에서는 이 규칙을 일반적으로 PI로 호칭하였다)
- 2) Regeln fu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 RAK.
Autorisierte Ausgabe. unveränderter Nachdruck. Wiesbaden,
Reichert, 1980

이들 규칙 중 단행본에 적용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단체를 포함한 기본기입의 선정과 관련된 규정을 고찰하였으며 표목형식이나 배열규칙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독일목록규칙에서의 기본기입 선정법

2. 1 저자의 개념

2. 1. 1 PI

구체적으로 개인저자(Verfasser)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출판물의 구성에 참여한 편자, 편찬자, 역자 등은 필요한 경우 상호참조한다고 규정함으로써(31조), 이들을 저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였으며, 특히 저작의 생산을 권유하거나 지원한 개인이나 제작처(Urheber)는

무시하여(32조), 저작의 내용을 집필한 사람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를 저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⁵⁾

2. 1. 2 RAK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저작물을 집필한 사람을 저자로 정의하고(16조), 이 저자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무저자명 저작과 같이 취급하였으며(17조), 이 무저자명 저작을 ①제작하거나(erarbeitet) ②지원하고 편집한(veranlaßt und herausgegeben) 단체는 제작처(Urheber)로 규정하여(18조), 개인저자(Verfasser)와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규칙에서도 저작의 내용을 창조한 사람으로 개인저자(Verfasser)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저자(Verfasser)를 규정하면서 그 저작물에서 저자로 표시된 인물을 그대로 저자로 수용하여 영미목록규칙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활동을 의미하는 지적 책임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2 저자기입

2. 2. 1 PI

1) 개인 저작물의 기입

개인저작물에서는 저자명이 결정적인 요소로서, 저자명이 기재되었거나 확인 가능시에는 항상 그 저자명아래 기입하고, 저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서명(Sachtitel; real title)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여(30, 69-71조), 2분법적인 단순한 논리를 적용하였다. 또 개인의 전집이나 수장품 목록과 같은 도서는 편자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인이 저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 개인저자아래

5) Hermann Fuchs, Kommentar; Zu den Instruktionen fur die alphabetischen Kataloge der Preussischen Bibliotheken. 2., durchgesehene Auflag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8. p. 80

기입하고 편자로부터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59조), 회사의 판매목록이나 사업계획서와 같은 출판물은 회사명아래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저자가 기재된 경우는 59조에 따라 저자 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여(60조), 저자를 기입에서 우선하였다. 이밖에 개인적 출판물(장례설교집, 결혼 축시, 축사, 연설집, 기타 개인적 성격의 특수 출판물)에서도 저자로 표시된 경우는 이 저자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고(57조) 그림이나 음악작품의 작가도 저자로 취급하여 이 저자아래 기입을 규정하였다(48조).

2) 공저서의 기입

2~3인의 저자가 협력하여 작성한 독립된 저작을 공저서로 규정하고 이 경우 첫번째 저자아래 기입하고 나머지 공저자로부터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67조), 기본기입과 참조를 통하여 목록상 특정 저자의 저작물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합집

합집은 종합서명을 지녔거나 4인 이상의 저자의 저작물로서 주제나 범위가 한정된 출판물로 규정하고(8조 4), 독립된 저작의 합집으로서 종합서명이 있으면 종합서명아래 기입하고, 여기에 수록된 독립된 개개의 저작으로부터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종합서명이 없으면 첫번째 저작의 서명아래 기입하고 기타 저작에서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록된 저작이 특별히 많은 경우는 처음에 수록된 3 저작만을 기입하도록 하였다(66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합집에서는 저자의 개념을 편자나 발간한 인물로 확대하여 예외적으로 규정하였다.⁶⁾

① 명문집, 명시선, 찬송가, 기도서, 발췌서, 용어집은 편자

6) Instruktionen fur die alphabetischen Kataloge der preuβ ischen Bibliotgheken, vom 10. Mai 1899. zweite ausgabe, unveranderter Nachdruck.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08. p. 30 저자 개념의 확장과 제한(1장) 참조

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36조).

- ② 유고집(遺稿集)은 이를 발간한 사람이나 가계명(家系名)아래 기입하고, 서한집으로서 서명에 송신자나 수신자 중 한 사람만이 기재된 것은 그 사람아래 기입하고, 수신자가 한 사람만 기재되었거나 수신자 이외에 4인 이상의 송신자가 기재된 경우는 수신자아래 기입하고, 첫번째 송신자로부터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38조).
- ③ 무용담, 동화집, 격언집, 수수께끼집, 민속음악의 합집은 편자아래 기입하며(39조),
- ④ 특정 주제나 지역으로 한정된 법률집, 규정집은 편자아래 기입하며(40조),
- ⑤ 비명집(碑銘集)도 편자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41조).

4) 관련 저작물

일반적으로 원저작아래 기입하고 저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저작물에서는 편(찬)자, 번역자, 주석자로 항상 참조하도록 규정하였다(20조 2-a). 다만 자체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번역서(자국어로 최초로 번역된 번역서)는 역자아래 기입하고(43조), 개정판으로서 원저작과 크게 상이하여 독립된 저작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은 개정자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44조).

부록은 자체 출판물에서 기입어를 선정하도록 하여(46조), 독립된 저작으로 취급하고, 별책으로 간행된 색인은 관련된 원저작의 서명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47조).

2. 2. 2 RAK

1) 개인 저작물의 기입

개인 저작물은 저자아래 기본기입하도록 일반원칙을 제시하고(601조), 개인저자의 선집도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621조).

- ① 내용상의 저자와 형식상의 저자;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

술한 저작물일지라도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저작의 문장형식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저자로 기재된 인물의 사상을 담은 저작물에서는 이 인물만을 저자로 규정하고(610조), 그 저자아래 기본기입한다.

- ② 보고자와 피회견자; 한 저작물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관한 보고서인 경우는 보고자를 저자로 취급하고, 여러 사람간의 대화 내용을 수록한 저작물에서는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저자로 취급된다(611 조).
- ③ 저자와 삽화가; 한 저작물이 저자와 삽화가의 공저서인 경우 이를 양자를 모두 저자로 인정하고, 공저서인지의 여부를 내용상으로나 서명의 표현형식으로부터 암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저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나 서명의 표현형식에서 결정하기가 모호한 경우는 글을 쓴 사람을 저자로 취급하였다(612조).
- ④ 예술가와 글의 저자; 예술가의 실제 창작물이나 그 사본으로 구성된 저작물에서는 예술가를 저자로 취급하고, 내용상으로나 서명의 표현형식에서 예술가의 작품인지 아니면 저작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예술가의 작품으로 취급하였다(613조).
- ⑤ 작곡자와 작사자; 음악 작품에서는 작곡자를 우선하고, 독립된 가사로 구성된 저작에서는 작사자를 저자로 취급하였다(614조).
- ⑥ 논문 청구자와 심사위원장; 고대의 학위논문에서는 비록 청구자가 저자로 표시된 경우라도 심사위원장은 저자로 취급하고, 현대의 학위논문에서는 청구자를 저자로 취급하였다(615조).

상기 조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용상으로'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저작의 내용에 책임을 진 인물을 우선하여 저자로 수용하였으나, '서명의 표현형식'이란 표현도 사용함으로써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기준하여 서명에 저자로 기재된 인물도 저자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공저서의 기입

일반적으로 2~3인의 공저서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표시되었거나(인쇄상으로) 처음에 기재된 저자아래 기본기입하고, 4인 이상의 공저서는 무저자명 저작물과 같이 취급하여(601조 2, 3) 서명아래 기입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2~3인의 공저서에서는 2번째 이하에 기재된 저자로부터 부기입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고(602 조), 4인 이상의 공저서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표시된 저자나 첫번째 기재된 저자아래 부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603조 3). 따라서 기존의 PI에서 특정 저자의 저작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기입과 참조의 기능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RAK에서는 기본기입과 부기입의 기능으로 규정하였다. 기본기입(Haupteintragung)과 부기입(Nebeneintragung)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된 요인은 자모순목록에서 기본기입이 목록의 근간이고, 부기입은 동일한 기본기입을 가진 도서를 상호 연결하는 것이라는 ICCP의 목록원칙규범⁷⁾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저작물

- ① 주석서와 원서; 원문이 포함된 주석서는 일반적으로 원서의 한 판으로 취급하였으나 주석이 우위를 점하는 경우는 독립된 저작으로 취급하여 주석자를 저자로 인정하였다(616조).
- ② 개정판과 원저작; 일반적으로 한 저작의 개정판은 원저작의 한 판으로 취급하였으나 원저작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개정판은 독립된 저작으로 취급하여 개정자를 저자로 취급하였다(617조). 개정판인지의 여부는 저작의 내용이나 서명의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 ③ 색인과 원저작; 한 저작의 특정한 판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Statement of Principl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Oct., 1961.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a Verona.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 p.15

발행된 색인으로서 원서명 다음에 색인 서명이 표시된 것은 원 저작의 한 판으로 취급하고, 관련된 원서명이 표시되지 않은 색인은 독립된 저작으로 취급하였다(618조). 따라서 색인 대상인 저작의 서명이 색인서명에 표시여부로 기입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 ④ 속편, 부록과 원저작; 고유한 서명을 지닌 속편이나 부록은 독립된 저작으로 취급하였다(619조).

4) 합집

상이한 저자의 둘 이상의 독립된 저작으로 구성된 출판물을 합집으로 규정하였다(6조).

(1) 종합서명을 지닌 합집; 종합서명을 지닌 합집은 무저자명 저작과 같이 취급하여 서명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624조).

(2) 종합서명이 없는 합집; 특별히 중요하게 표시되었거나 첫번째 기재된 저작물의 서명아래 기본기입하고, 기타 저작물로 부기입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623조).

한편 저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저작물은 무저자명 저작과 같이 취급하여 서명아래 기입을 일관되게 규정하였다(695조).

2. 3 단체기입

2. 3. 1 단체의 정의

2. 3. 1. 1 PI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저작의 생산을 권유하거나(*Veranlassung*) 지원한(*mit deren Untersttzung die Schrift entstanden ist*) 공적 단체(*Behrden*), 회사(*Korporationen*)는 기입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는데(32조), 이 것은 푸흐스(H. Fuchs)의 지적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과 일치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결과로 평가하였다.⁸⁾

8) Hermann Fuchs, op. cit., p.223

2. 3. 1. 2 RAK

명칭으로 식별되는 하나의 실체로 단체를 규정하고(631조 a), 여기에 조직체, 기관, 기업체, 회의 등 모든 인간집단⁹⁾과 영토상의 실체(영토관할당국과 구역)¹⁰⁾를 단체의 범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법률상의 단체(법인)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하였다(631조).

2. 3. 2 단체의 저자성

RAK에서는 저작물을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저자가 표시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개인저작물로 취급하고, 저자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저자명 저작과 같이 취급하였다(17조).

여기서 저자란 말은 저작을 쓴 사람(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으로 규정하여(16조), 개인만을 저자로 인정하고, 단체는 저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였으며, 저자표시없이 단체에서 간행된 출판물은 무저자명 저작과 같이 취급하고, 이 무저자명 저작을 제작하거나 (erarbeitet) 혹은 후원하고 편집한(veranlaßt und herausgegeben) 단체는 제작처(Urheber)로 규정하였다(18조, 632조 1).

2. 3. 2. 1 제작처로서의 단체

(1) 실제로 단체가 저작을 제작하거나 후원, 편집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출판물에 표시된 형식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단지 편자로 표시된 단체, 또는 표제면상의 상단에 표시된 단체, 또는 발행사항에 발행처로 표시된 단체에도 적

-
- 9)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RAK. Autorisierte Ausgabe, unveränderter Nachdruck. Wiesbaden, Reichert, 1980. p.256에서 협회, 조합, 노동단체, 정당, 노동조합, 국회, 전문학교, 대학, 직업학교 기관, 문서보존소, 도서관, 박물관, 국장, 회사, 기업체, 은행, 종권거래소, 교회, 교단, 수도원, 회의, 전시회, 박람회, 부활축제(復活祝祭; Festwochen) 등을 단체의 범주로 예시하고 있다.
- 10) Ibid., p. 256의 631 b에서 관할당국으로서 국가, 주,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으로서 국회, 정부, 정부의 부처, 기타 당국과 그 부처 법원, 군사관할당국, 외교대표를 예시하고 있다.

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2) 그밖에 무저자명 저작물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포함된 단체도 다음의 경우 제작처(Urheber)로 취급하였다(633조).

① 그 저작물에서 하나의 설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제로 취급된 단체

② 본서명이 저작의 내용과는 관련없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용어만으로 구성된 출판물로서 여기에는 연감(Jahrbuch), 통계(Statistik), 편람(Handbuch), 문고본(Taschenbuch)등의 일반적인 용어와, 행정적(amtlich), 학술적(wissenschaftlich), 기술적(technisch), 통계적(statistische), 서지적(bibliographische)과 같이, 형식을 표현한 용어만으로 서명이 구성된 출판물을 의미한다(633조 b).¹²⁾ 이러한 출판물에 단체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단체가 제작처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저작의 내용이나 표현상 그 단체가 제작처임을 알 수 있는 경우

(3) 종합서명아래 한 단체의 출판물과 기타 자료를 수록한 합집에서 단체의 저작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 그 단체를 제작처(Urheber)로 취급하였다(634조).

(4) 발행처연감, 발행처기념집, 발행처목록, 발행처안내서 및 발행처의 활동이나 역사에 관한 자료에서 상업출판사도 제작처로 취급하였다(635조).

2. 3. 2. 2 제작처로 인정할 수 없는 단체

다음과 같은 단체는 제작처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1) 저작의 완성에 단지 협력자, 위임자, 후원자, 발행처로 서만 관련된 단체

11) Ibid., p., 256의 632조 2의 주 참조

12) Ibid., p. 257

- (2) 기존의 저작을 새로운 출판물로 발간하면서 단지 발행처, 편자, 후원자, 번역자, 위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단체
- (3) 종합서명아래 한 단체의 저작물과 기타 자료를 수록한 합집에서 기타 자료가 우세한 경우
- (4) 등록대장의 형태로 발간된 증명서에서의 단체(636조).
- (5) 상업출판사의 출판물안내서, 발행처 잡지, 지도, 발행처달력의 경우(637조)

2. 3. 3 단체명아래의 기입

2. 3. 3. 1 PI

원칙적으로 단체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를 기입으로 수용하고 있다.

(1) 정부간행물

법률, 특히, 중서, 교황의 칙서, 사목서한, 기타 정부의 공식 출판물에서 제작처가 명기된 경우, 그 제작처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58조). 비록 상기의 자료에서도 개인명이 명기된 경우는 이를 저자기입으로 인정하였으며¹³⁾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단체도 저자로서의 단체가 아니라 저작물을 편집하거나 저작을 지원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매목록, 사업계획서

회사의 판매목록이나 사업계획서에 회사명이 명기된 경우 그 회사명아래 기입하도록 하여, 'Oswald Weigel'이라는 고서점에서 발간한 식물학관련 재고목록 (*Botanischer Lagerkatalog von Oswald Weigel's Antiquarium in Leipzig*)은 이 서점명아래 기입하도록 예시하였다(60조). 그러나 이 경우도 회사명이 인명으로 구성된 경우로만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인명만이 저자기입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2, 143조).

13) Hermann Fuchs, op. cit., p. 182

그러나 인명이 아닌 경우도 기입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Akademischer Verlag in Munich’는 ‘Verlag, Akademischer, München’과 같은 저자기입으로 취급되고 있다(145조). 상기 기입은 사실상 단체기입이면서도 PI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단체기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단체와 관련된 기타 출판물

특정주제나 지역으로 한정된 법률, 명령, 기타 법률자료의 합집은 편자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40조), 동일 저작의 상이한 판으로서 서명이 상이한 규정이나 정부간행물은 항상 첫판의 공식서명 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고(217조), 협회나 기관의 재정서, 인명부, 연간보고서, 연중행사록도 서명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61조). 따라서 단체출판물은 일부 저자명아래 기입되고 기타는 서명아래 기입하도록 하여, 단체기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영미의 목록과 가장 큰 대립현상을 보이고 있다.

2. 3. 3. 2 RAK

무저자명 저작에서 제작처로서의 단체가 본서명에 포함되었거나 기타 서명에 포함된 경우 그 단체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639조 1), 단체기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해 온 독일의 오랜 목록관행으로부터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아울러 상기 규정에 따라 제작처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충되는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 개인과 단체가 동시에 표시된 저작물에서는 언제나 개인이 우선한다. 이것은 그 저작의 완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와는 관계없이 항상 개인이 우선한다.¹⁴⁾ 목록작성자의 처지에서 보면 이것은 기입 선정시 대단히 편리한 것으로 단체기입의 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연방을 구성하는 각 국가, 주) 및 지방행정단위(도, 시, 군, 구)를

14) Franz Georg Kaltwasser, “The New German’ Rules for Alphabetical Cataloguing(RAK)’ and Thei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IFLA Journal, vol. 1, no. 4, 1975. p. 281

져오게 되었다.

(1) 관할구

일정한 구역(영토) 내에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국가, 단체로 규정하고(649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관할구의 범위

관할구의 하부부처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현저하게 입법, 사법, 행정, 외교,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회, 행정부, 정부의 각 부처, 법원, 출판국, 공사, 군대)와 영토관할구의 하부기관이나 소속단체로서 독자적 명칭을 지니고 있고, 그 명칭이 관할구의 일반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관할구의 부처로 취급하였다(650조).

그러나 관할구에 소속된 하위단체로서 특별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육, 문화, 학술, 기술, 상업, 종교,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단체(학교, 대학교, 극장, 도서관, 문서보존소, 박물관, 연구소, 천문대, 동식물원, 교통설비, 우체국, 상공회의소, 교회, 병원, 수용소), 기관 및 협회는 관할구에서 제외하였다(651조).

② 제작처로서의 관할구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구나 그 하위부처를 제작처로 취급하고 관할구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저자명 저작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지원하고 편집한 경우

(651조 1)

㉡ 관할구가 무저자명 저작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표시된 경우(652조 2)

㉢ 헌법이나 조약 및 그 합집(653조 a, 656 657조, 659, 660조)

㉣ 행정관보, 규정집, 법령공보, 예산서(653조 b)

상기 규정 가운데 특이한 사항은 관할구가 무저자명 저작의 서명에 포함된 경우로서, 출판물의 형태나 관할구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그 출판물에 표현된 형식에 따라 제작처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명령 및 그 합집(653조 c, 663조)은 본서명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2) 종교단체

① 종교단체 및 그 범위

규범이나 의식, 교리 등에서 독자적인 단체와 이들 단체의 연합체를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그 범주에는 지역교회, 교회연합체, 교파와 종교단체의 지역행정단위(교구, 대교구, 관구)와 교단, 종교회의, 수도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667조).

그러나 한 종교단체의 소속단체거나 하위단체로서 직접 교육, 문화, 학술, 과학, 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단체(학교, 도서관, 문서보존소, 박물관, 연구소 등)는 종교단체에서 제외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소속단체거나 하위단체로서 그 명칭이 일반적으로 종교단체의 조직임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 그 단체의 기능과는 관련없이 종교단체에서 제외하였다(669조).

① 제작처로서의 종교단체

이상의 종교단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작처로 취급되고 그 단체명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저자명 저작을 제작하거나 지원.편집한 경우(670조 1)

㉡ 무저자명 저작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포함된 종교단체
(670조 2)

㉢ 교회법과 조약 및 그 합집(671조 a, 674, 675, 676조)

㉣ 행정관보, 규정집, 예산서(671조 b, 677조)

㉤ 명령(671조 c, 678, 679조)

그러나 전례서 및 그 합집은 본서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여(680조) 서명기입을 확대 적용하였다. 상기 규정에서도 저작물의 서명에 포함된 종교단체는 그 단체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제작처로 취급되고 있다.

(3) 회의, 박람회, 미사

① 제작처로서의 회의

학술,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 목적을 위한 개인과 단체의 집회를 회의로 규정하고(682조), 다음의 경우 회의를 그 출판물의 제작처로 취급하였다.

① 단체로서의 회의가 무저자명 저작을 제작하거나 지원.편집한 경우(686조 1)

㉡ 무저자명 저작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포함된 회의(686조 2)

㉢ 개인저자(1~3인)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다른 단체가 본서명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회의는 그 회의의 프로그램 및 회의보고서의 제작처로 취급하였다(686조 3).

상기 규정에서도 저작물의 서명에 포함된 회의는 그 회의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그 저작물의 제작처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회의에 참여한 여러 개인이나 단체 출판물의 합집은 일반적으로 그 회의를 제작처로 취급하고(687조 2), 그 합집이 한 단체에 의하여 지원. 편집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그 출판물의 제작처로 규정하였다(687조 3).

② 회의아래 기입

회의 출판물의 표제면상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회의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서명아래 기본기입하고(690조 2), 표제면상에 회의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회의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여(691조), 출판물의 표현형식에 따라 기입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2. 3. 4 ICCP와 단체저자

2. 3. 4. 1 단체기입원칙의 수용

1961년에 개최된 ICCP의 목적은 저자서명목록에서 기입의 선정과

형식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제정하는 것이었다.¹⁵⁾ 따라서 국제협력이 가능한 일련의 목록원칙의 수립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PI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체를 기입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향권에 있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목록규칙과 함께,¹⁶⁾ 단체기입을 인정하는 영미목록규칙과 대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단체를 기입으로 인정함으로써 목록의 국제적 협력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⁷⁾

이처럼 독일이 단체기입을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제2차 대전 이후 목록규칙 개정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특히 전쟁으로 파괴된 도서관의 재건과 장서개발 및 목록작성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 중에서도 단체에서 발행된 출판물을 포함한 무저자명 저작의 취급과 PI의 복잡한 문법적 배열원칙은 목록의 국제협력이라는 점에서 장애요인으로 생각하였고¹⁸⁾ 아울러 전세계 비독어권으로 독일목록규칙이 확산되지 못한 요인 중의 하나가 단체기입을 인정하지 않은 PI 때문이라는 이유였다.¹⁹⁾

-
- 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Report,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D, 1981. p. 24
 - 16) J.C.M. Hanson, A Comparative Study of Cataloging Rule Based on the Anglo - American Code of 19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p.47
 - 1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Statement of Principles, p. 40
 - 18) Franz Georg Kaltwasser, "Entstehung, Strukturen und Anwendung der neuen Regeln fu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RAK)," Zeitschrift fu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s. vol. 21, 1974. pp. 3, 14-18
 - 19) W. Bauhuis, "Katalogreformen," Zeitschrift fur Bibliothekswesen un Bibliographie, vol. 1.1954. p. 194를 Andrew D. Osborn "Cataloging Code in Other Countries Today," Library Quarterly, vol. 26, 1956. p.280에서 재인용

따라서 단체기입원칙의 수용은 영미목록과 독일목록간의 목록이론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적인 협동목록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단체의 저자성 자체에 대한 찬반론은 독일목록계 내부에서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²⁰⁾

2. 3. 4. 2 단체아래의 기입

1) 단체의 정의

일반적으로 영미목록규칙의 AA(1908)와 미국도서관협회 목록규칙(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1949)에서는 단체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식별명칭이 없는 일단의 집단도 단체로 인정하였으나, 이 회의에서는 단체명이나 집합명칭으로 알려진 기관, 조직체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 정의하여(9조 1), 목록 목적상 단체는 집합적인 식별명칭을 지녀야 하며, 따라서 명칭없는 집단은 단체에서 제외하였다.

2) 단체의 저자성

ICCP의 목록원칙규범에서는 저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개인저자나 단체저자라는 용어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 “단체아래 기입”(9조), 또는 “저작은 단체명아래 기본기입한다”(9조 1)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저자라는 용어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2. 3. 4. 3 단체기입

단체아래 기입되는 경우를 2가지로 규정하였다.

(1) 저작의 성질상 한 단체의 집합의지나 활동을 표현한 경우(9조 11),

(2) 저작의 성격과 관련하여 단체가 그 저작의 내용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서명이나 또는 표제면상의 표현이 암시하는 경

20) Nora Tamberg, The Development of Uniform Bibliographic Principles
University of Pittsburgh, 1981. p. 21

우(9조 12)이다.

상기 내용중 (1)은 저작의 내용과 단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를 저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체가 저작의 기능에 보조역할(편자)을 한 경우에는 부기입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9조 2), 이러한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한편 (2)는 서명이나 표제면상의 표현을 기준한 것으로, 단체기입은 저작성이란 기준과 저작물 자체에 표시된 물리적 기준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체를 저자로 규정한 영미목록규칙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독일목록규칙과의 상반된 견해를 조정한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따라서 출판물에 구체화된 저작의 내용인지 아니면 서명이나 표제면상의 형식상의 표현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임이 지적되었다.²¹⁾ 심지어 이 목록원칙규범의 주석판의 저자도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²²⁾ 결국 이후의 각국 목록규칙에서도 상기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상이한 기준을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영미목록규칙 1판(AACR1)은 (1)의 기준을 따라 저작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수용한 것이고, RAK는 (2)의 기준에 따라 표현의 문제로 단체기입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²³⁾

21) Ake I. Koel, "Can the Problems of Corporate Authorship be Solved?"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8, no. 4, 1974. p. 350

2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Statement of Principles, p. 41

23) Michael Gorman, "Changes in Cataloguing Codes; Rules for Entry and Heading", Library Trends, vol. 25, no. 3, 1977. pp. 595-596

3. 저자기본기입과 서명기본기입의 비교분석

서양의 목록법은 크게 보아 저자기본기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ICCP에서 채택된 목록원칙규범도 여전히 저자기본기입의 목록기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서명기본기입법을 적용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 중반까지 서명기본기입법을 사용해 왔으나 영미계 목록법의 영향을 받아 저자기본기입의 목록법을 표준 목록법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 와서 ISBD의 출현으로 기본기입없이 기술부만으로도 저록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에 의한 서지기술방식이 목록작성업무에 도입됨에 따라 저자기본기입의 의미는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목록기술법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서구의 저자기본기입법과 우리의 전통적인 서명기본기입법을 목록의 기능과 관련하여 비교 검토하는 것은 지금까지 목록기입법으로 중시되어온 저자기본기입의 기입원칙이 앞으로의 목록규칙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기입방식의 국제적 합의란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3. 1 서구에서 저자기본기입을 중시한 요인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저자기입을 다른 형태의 기입에 비해 중시하였는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간의 사고(思考)를 구체화한 것이 저작이므로 이 저작과 관련된 인물이 중시된다는 것이다. 즉 서구에서는 저작은 인간의 사고나 연구의 결과이며 이것을 인정하고 기록하는 것을 목록의 중

요한 기능으로 이해하였다.²⁴⁾ 페티(J. Pettee)도 저작의 창조에 책임을 진 인물을 기입선정시 첫번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크게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 합리적인 것으로 지적하고²⁵⁾ 저자기입이 다른 형태의 기입보다 우위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결국 저작의 식별요소 중 저자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비록 저작의 식별수단으로 서명이 있으나 개정, 번역 등의 이유로 자주 변경된다는 사실과²⁶⁾ 동일한 서명을 지닌 상이한 저작이 많고, 이 밖에 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자기입을 중요시하였다.

둘째, 19세기 책자목록을 편성할 때의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한 저작에 관한 모든 서지정보를 기본기입카드에 기재하고 부기입카드에는 간략한 서지정보만을 기재하였다는 점이다.²⁷⁾ 이렇게 함으로써 목록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고 목록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기입카드와는 달리 기본기입카드를 통해서 완벽한 서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본기입이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모을 수 있고 따라서 이 기능을 목록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이해하였다.²⁸⁾ 루베츠키(S. Lubetzky)도 한 저자의 저작과 한 저작

-
- 24) James A. Tait, Authors and Titles; an Analytical Study of the Author Concept in Codes of Cataloguing Rules in the English Language from that of the British Museum in 1841 to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1967. London, Archon Books, 1969. p.9
- 25) Julia Pettee, "The Development of Authorship Entry and the Formulation of Authorship Rules as Found in the Anglo-American Code," Libriary Quarterly, vol. 6, 1936. p. 273
- 26) James A. Tait, op. cit., pp. 7-8
- 27) Charles A. Cutter,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Rewritten.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p. 21
- 28) Julia Pettee, op. cit., p. 285

의 판을 목록상에서 그 저자명아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자기본기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²⁹⁾

따라서 저자기입은 특정 저작의 저작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모으는 기능에서 서명기입이나 주제명기입에 비해 우수하다는 이유에서 중요한 기입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2 서양의 저자기본기입법과 동양의 서명기본기입법의 우위성

3. 2. 1 경제적 측면에서의 저자기본기입

기본기입카드에는 완전한 서지정보가 기재된다는 점에서 기본기입을 중시하였다. ICCP의 목록원칙규범에서도 “문헌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모든 특성이 기재된 완전한 기입”³⁰⁾이라고 하여 기본기입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서지기술단위카드의 사용과 목록업무의 자동화가 추진되면서 기본기입카드와 부기입카드에 기재되는 서지정보의 내용에서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목록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저작의 검색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본기입과 부기입은 동일한 레코드에 대한 검색요소로서 대등한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스템포드대학 도서관의 존슨(R. D. Johnson)은 이 도서관에서 서명단 위기입을 적용하면서 기계가독파일에서 기본기입을 지정해야 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와인트러브(D. K. Weintraub)도 기계가독파일에서는 더 많은 표목과 검색점을 부여할 수 있음으로 기입을 제한하는 것은 유용성을

29) Seymour Lubetzky,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 Wa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53. p. 59

3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Statement of Principles p. 15의 4조 1항

31) Richard D. Johnson, “A Book Catalog at Standford,”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vol. 1, no.1, 1968. p. 21

제한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³²⁾

저자기본기입을 규정하고 있는 AACR2도 기본기입이라는 개념을 보유한 채 발간되었으나 그 기능은 약화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³⁾ 특히 와이너(B. S. Wynar)는 앞으로의 목록규칙에서는 특정한 검색 점을 기본기입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³⁴⁾

파커(R. Parker)도 단위카드를 사용하는 복수기입제 목록에서 기본기입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의미한 것으로 지적하였다.³⁵⁾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본기입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오늘과 같은 자동화 목록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도서관 연간 예산액 중 도서구입비와 인건비가 대등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³⁶⁾ 절대성이 없는 기본기입 표목을 잡아 주는데 투입되는 가장 비싼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자 기본기입은 그 의미가 없다.

각종 목록체계(사전체목록, 분할목록 또는 분류목록)에서 기본기입은 문헌을 검색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원하는 문헌을 검색하는데 어떤 표목을 대표로 고려할 것인가는 이용자에게 무의미하다. 따라서 정확한 기본기입을 선정하는 것만큼, 적절한 부기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결국 경제성이란 점에서 특정 기입

32) D. Kathryn Weintraub, "Functions and Types of Entry; a Review of Earlier Codes for Corporate Entry," Library Quarterly, vol. 50, no. 2, 1980. p. 226

33) 1) 南台祐, 目錄에 있어서의 標目法의 變遷考; 特히 英美系 目錄規則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1982. pp. 150-151

2) Bohdan S. Wynar,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7th ed. by Arlene G. Taylor.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85. p. 44

34) Bohdan S. Wynar, op. cit., pp. 44-45

35) Ralph H. Parker, "Book Catalogs," Library Resource & Technical Services, vol. 8, no. 4, 1964. p. 345

36) 李慶浩, 沈宜順, "大學圖書館 資料處理 原價計算에 관한 研究; 大邱大學校 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 圖書館學論集, 第10輯, 1983. p. 178

을 기본기입으로 중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2. 2 검색도구로서의 저자기입

일반적으로 목록에서는 서명이나 저자명(인명) 또는 주제명(분류)을 기입(검색점)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주제명기입은 특정도서의 식별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서의 식별요소로서의 서명과 저자명 중에서 하나를 택일한다면 어느 요소가 식별수단으로 우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곧 기본기입선정의 기준이다.³⁷⁾

그런데 저자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람은 그 이름(인명)으로, 각종 단체는 그 명칭(단체명)으로 식별되는 것과 같이, 도서도 그 서명으로 식별되어야 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명은 도서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다른 서지기입과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이미 고유명사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제면상의 서명을 옮겨 적을 때 비록 철자가 잘못되었거나 인쇄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전사(轉寫)하도록 각종 목록규칙이 규정하고 있음도 그 이유로 생각된다. 목록이용자가 저자나 공저자 또는 편자를 도구로 하여 도서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서명으로 찾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³⁸⁾

특히 리재철 교수는 서명기입이 검색도구로서 저자기입에 비해 직접적인 검색방법임을 지적하고, 서명기입을 목록이론상 저자기입 보다 더 발달된 형태로 평가하였다.³⁹⁾

서구에서도 기입으로서의 저자명은 그 저자의 전체 저작물에 대한 식별기호이지 특정 도서에 대한 식별기호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

37)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p. 11

38) 위의 글

39) 李載喆, “韓國目錄規則 3版의 編纂報告; KCR3의 特性에 중신하여,” 圖協會報, 제23권 제6호, 1982. p. 3

히려 서명에 그 중요성을 두었다.⁴⁰⁾

루베츠키도 서명기입의 기능을 지적하면서 도서에 직접적인 접근책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⁴¹⁾ 그는 비록 저자명을 알고 있을 때라도 서명으로 검색하는 것이 확실히 쉽고 편리한 검색방법임을 제시한 바 있다.⁴²⁾ 이처럼 루베츠키는 목록기능상 서명기입이 다른 기입에 비해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면서도 서명은 가변요인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여,⁴³⁾ 이론상으로는 서명기입을 다른 기입보다 우위에 두면서도 실제로는 저자기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양면성을 취했다.

한편 서구의 기본기입법을 비판한 함디(M. N. Hamdy)도 서명이 도서의 식별수단으로서 저자보다 우선하며 직접적인 검색방법임을 제시하고,⁴⁴⁾ 아울러 동양의 서명단위기입(title unit entry)이 서구의 저자기입에 비해 단순하고 표준적이며, 직접적인 접근방법으로 결론짓고⁴⁵⁾ 목록이론이나 실제 목록작성과정에서 저자기본기입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서명기입에 기초한 규칙의 제정을 제기한 바 있다.⁴⁶⁾

따라서 저작에의 직접접근이란 면에서 저자명을 거쳐 서명으로

40) A. Domanovszky, Functions and Objects of Author and Title Cataloging, München, Verlag Dokumentation, 1975. pp. 36-37

41) Seymour Lubetzky, "Titles: Fifth Column of the Catalog," Library Quarterly, vol. 11, 1941. pp. 424-425

42) Ibid., p. 425

43) Ibid.

44) M. Nabil Hamdy, The The Concept of Main Entry as Represented in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3. p. 48

45) Ibid., p. 56

46) Ibid., p. 132

검색하는 간접적인 저자기입보다 직접 서명으로 검색하는 서명기입이 목록이론상 논리적이고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2. 3 ISBD의 출현과 저자기입

ISBD의 출현은 저자를 앞세워 기입하는 저자기본기입법과 서명을 앞세워 기입하는 서명기본기입법과의 논쟁에서 “동양의 전통적 목록법이었던 서명선기입법의 승리”⁴⁷⁾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올림말없이도 독립적이며 완전한 저록”⁴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전통적 서명기입법과 일치하게 되었음을 리재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도서의 제일가는 식별요소를 서명으로 삼고 항상 이를 기술의 맨머리에 적고 저자표시를 나중에 적는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동양의 전통적 서명주기입법과 일치하는 목록기입법으로 변한 셈이 되었다”⁴⁹⁾

KCR3은 바로 이 ISBD에 기초한 규칙으로서 도서의 식별기능을 하는 기술부와 검색기능을 하는 표목부를 각기 독립시켰다. 즉 KCR3의 표목을 럼지시편에서는 표목의 기재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서명표목과 저자표목을 표목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요소가 기술부(주기사항 포함)에 적힌 순서대로 기재하고, 그 뒤에 주제표목을 기재한다”⁵⁰⁾

이와 같이 기본기입표목의 선정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KCR1이나 KCR2가 규정한 기본기입의 선정을 위한 복잡한 규

47) 국제표준서지기술법(단행본용),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제정; 리재철, 현규
설 역주, p. 5의 역자의 말

48) 위의 책

49) 李載喆, “韓國目錄規則 3版의 編纂報告,” p. 3

50)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3版. 記述 標目올림指示篇.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3. p. 90

정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KCR3의 목록기술법을 통하여 서명기본기입의 단일기입제목록을 만들 수 있음을 리재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서명을 먼저 적고 저자표시를 뒤에 적는 KCR3의 목록기술법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편목방식과 똑같은 것으로서 그 기술부 독립의 유니트 카드의 첫머리를 직접 배열기준으로 삼으면 완전한 서명주기입의 단일기입제 목록을 만들 수 있다”⁵¹⁾

결국 지금까지 목록기입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기본기입 없이도 완전한 저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실상 서명기입은 전통적인 우리의 목록기입법으로서 196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의 표준목록기입으로 적용되어 왔으며⁵²⁾ 더욱이 저자기본기입의 KCR1이 공표된 이후에도 서명기본기입의 목록과 색인류가 여전히 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서명기본기입의 목록이 최근까지 발간되고 있다는 점과 서지기술단위카드를 복제하여 사용하게 되고 게다가 ISBN의 출현으로 지금까지 목록기입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기본기입 없이도 완전한 저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저자기입의 중요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2. 4 저자기본기입의 특장이라고 하는 특정 저자의 저작물을 모으는 기능에 대한 논란

서구에서는 특정 저자의 저작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저자기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패티(J. Pettee)는 이점에서

51) 李載喆, "한국목록분류법의 실상," 圖書館學報(中央大學校 圖書館學會)

52) 第4輯,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創設 20周年 紀念 特輯號. 1983. p. 21

1) 李載喆, "기술목록법상 표제의 기재에 대한 한 고찰," 圖書館學會

誌, (延世大學校 圖書館學會) 第3號, 1967. p. 9

2) ———,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p. 11

저자기입이 중요한 기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⁵³⁾

그러나 이 기능은 실제로 기본기입의 기능만은 아니며 부기입도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연결하는데 있어 기본기입과 대등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⁴⁾

ICCP의 목록원칙규범에서도 2-3인의 공저서에서 대표저자가 기재된 경우는 대표저자를 기본기입으로 하고 (10조 1), 대표저자가 기재되지 않은 공저서에서는 첫번째 기재된 저자를 기본기입으로 하고 2번째 이하의 저자로 부기입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10조 2항), 한 저자의 저작을 모으는 기능은 기본기입뿐만 아니라 부기입도 대등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저자기본기입의 목록규칙을 표준목록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기입선정에 절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예로 미국의 국회도서관에서도 한 저작이 상이한 기입아래 기입되었음을 볼 수 있고, 동일한 도서가 사서에 따라, 또는 도서관에 따라 상이하게 기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⁵⁾

이상에서 목록기능상 기본기입과 부기입의 역할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선정기준에 절대성이 없어⁵⁶⁾ 기입선정과정이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기본기입이란 오늘날과 같은 자동화목록 시대에서는 무의미한 개념으로서 과거의 목록관행에 지나치게 그 의미를 부여한데서 온 결과로 판단된다.

3. 3 목록이용자 측면에서 본 저자기입과 서명기입의 접근성

목록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목록에 접근하는가를 조사

53) Julia Pettee, op. cit., p. 270

54) Eva Verona, "The Function of the Main Entry in the Alphabetical Catalog; a Second Approach," Report, ICCP, London, IFLA Committee of Cataloging, 1981. p. 157

55) M. Nabil Hamdy, op. cit., pp. 24-27

56) 李載喆, “韓國目錄規則 3版의 編纂報告,” p.2

한 목록이용연구에 의하면 서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자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이다.⁵⁷⁾

데일리(J. E. Daily)는 단일기입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서명기입이 본질적인 요소임을 지적하였다.⁵⁸⁾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의 목록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⁵⁹⁾

한편 자동목록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아이레스(F. H. Ayres, et al.) 등은 특정 목록시스템(Aldermaston Mechanized Cataloguing and Ordering System)의 목록이용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목록이용시 사용하는 저자와 서명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를 450개의 표본으로 비교한 결과, 서명정보는 90%가 완전히 일치한 반면 저자정보는 75% 이하였음을 보고하고⁶⁰⁾ 이처럼 서명정보가 더 정확한 원인을 서명 자체가 지닌 조기성(助記性)의 성질로 이해하고⁶¹⁾ 서명으로 목록에 접근하는 것이 저자로의 접근보다 결과적으로 더 정확하다고 지적하였다.⁶²⁾

57) 노옥순, “도서관 목록의 이용에 관한 연구와 목록의 내용,” 圖書館學, 第七輯, 1980. pp. 82-83

58) Jay E. Daily, “Title Entry as Unit Entry,”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6, no. 4, 1972. p. 438

59) 1) 박온자, 圖書館 目錄 利用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1. p. 48

2) 姜惠英, “大學圖書館의 目錄利用行態의 一考察,” 圖書館學論集, 第九輯, 1982. pp. 21-23

3) 崔達鉉, “大學圖書館의 目錄利用研究,” 圖書館學論集, 第九輯, 1982. p. 263

60) F. H. Ayres, et al., “Author versus Title; a Comparative Survey of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which the User Brings to the Library Catalogu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24, no. 4, 1968. pp. 266-268

61) Ibid., p. 268

62) Ibid., p. 271

특히 대학도서관의 참고업무담당직원들이 참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지요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⁶³⁾ 검색의 일차적인 수단으로 서명기입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 이용률의 53.1% (914회)에 달하였으며, 반면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저자기입을 일차 검색수단으로 이용한 비율은 22.9%(395회)에 불과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참고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는 일반 이용자와는 달리 목록 이용법이나 목록규칙에 대한 이해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게다가 저자기본기입을 표준목록법으로 채택한 국내 대학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서명기입을 저자기입에 비해 검색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서명이 지니는 검색기능이 저자보다 우위에 있음을 실증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서명기입은 지금까지 서구에서 제기된 것과는 달리 이용자들이 기억하기 쉽고, 문헌검색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검색도구로서 저자기입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목록이용자의 처지에서 보면 저자기본기입도 저작을 검색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서명기입이 특정 문헌의 검색이란 면에서 저자기입보다 유용성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3. 4 도서 이외의 출판물에서의 서명기입의 효과

서명기입은 도서 이외의 다른 출판물에서도 저자기입보다 검색도구로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⁶⁴⁾ 그래서 모든 연속간행물을 그 표

63) Jon R. Hufford, "Elements of the Bibliographic Record Used by Reference Staff Members at Three ARL Acade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52, no. 1, 1991. p. 58

64) 崔達鉉, “逐次刊行物의 基本記入選定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第4輯, 1977. p. 226

제아래 기입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⁶⁵⁾ 이와 함께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과 이용에 관한 실태를 국내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변태현의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⁶⁶⁾

실제로 이미 AACR1의 영국판에서는 연속간행물을 표제(잡지명) 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도 표제기입의 유용성을 알 수 있다.⁶⁷⁾

Hicks(W. B. Hicks)와 틸린(A. M. Tillin)은 모든 비책자자료에도 서명 즉 표제기본기입을 사용하도록 하고⁶⁸⁾ 표제기입의 효용성을 지적하였다.⁶⁹⁾

결국 서명기입은 도서뿐만 아니라 연속간행물과 비책자자료 등에 서도 저자기입보다 검색요소로서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연속간행물에는 다수 저자의 저작물이 수록된다는 점과 특히 비책자자료에는 저작의 생산에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 다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검색측면에서 보면 검색점으로서의 저자기본기입은 대단히 번거롭고 시간을 요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65) 1)위의 글, p. 235

2) Wesley Simonton, "Serial Cataloging Problems; Rules of Entry and Definition of Titl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p. 296

66) 邊台鉉, 우리나라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 석사학위논문, 慶北大學校 大學院, 1990. pp. 39-60

67) Michael Gorman, "The Current State of Standardization in the Cataloguing of Serial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p. 303

68) Warren B. Hicks, Alma M. Tillin, Developing Multi-Media Librariae, New York, R. R. Bowker, 1970. p. 72

69) Ibid., p. 73 Professor, Hannam University

4. 결론

이상의 고찰에서 독일목록규칙에서는 기입선정시 여러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 한 저작물에 동시에 기재된 경우와 관련저작물 및 책임성이 혼합된 저작물에서 기입선정 기준이 복잡하여 절대성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 단체기입에서 제작처(Urheber)를 확인하는 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할구를 기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단체를 기입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조약문서가 지닌 독특한 서지형태상의 문제로 인해 기입선정의 판단에 어려움이 잔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표제면상의 표현형식 등이 기입의 선정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저자기본기입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전통과 관행이란 이유를 제외하고는 목록이론이나 구조상에서 그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이론이나 합리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정기준에 절대성이 없어 기입선정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의미없는 기본기입의 선정에 도서관의 가장 비싼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과 관련하여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특히 ISBD의 출현으로 서명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저자명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부만으로 완전한 저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부 독립의 목록으로 배열하게 되면 바로 서명기입의 단일제 목록을 만들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동화 목록의 실현으로 모든 기입은 검색점으로서 대등하여 목록기능상 기본기입과 부기입의 역할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서명기입이 저자기입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색점이라는 사실이 목록이용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밖에 특정 저자의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모으는 기능도 기본기입만의 기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서명기입은 도서 이외 모든 도서관자료에서도 그 유

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저자기입을 기본기입으로 규정한 서구의 저자기본기입법에 비해 저작에의 직접적인 접근점이란 점에서 오히려 서명기입이 목록기능상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적 서명기본기입법이 서구의 저자기본기입법 보다 우위에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재평가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목록규칙에서는 저자기본기입법을 배제하고 KCR3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명으로 시작하는 기술방식의 도입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姜惠英. “大學圖書館의 目錄利用行態의 一考察,” 圖書館學論集, 第9輯, 1982. pp. 1-31
- 南台祐. 目錄에 있어서의 標目法의 變遷考; 特히 英美系 目錄規則 을 中心으로. 석사학위 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1982
- 노옥순. “도서관 목록의 이용에 관한 연구와 목록의 내용,” 圖書館學, 第七輯, 1980. pp. 69-88
- 박온자. 圖書館 目錄 利用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1
- 邊台鉉. 우리나라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 석사학위논문, 慶北大學校 大學院, 1990
- 李慶浩, 沈宜順. “大學圖書館 資料處理 原價計算에 關한 研究; 大邱大學校 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 圖書館學論集, 第10輯, 1983. pp. 157-189
- 李載喆. “기술목록법상 표제의 기재에 대한 한 고찰,” 圖書館學會誌, (延世大學校 圖書館學會) 第3號, 1967. pp. 1-13
- _____. “韓國目錄規則 3版의 編纂報告; KCR3의 特性에 중심하여,” 圖協會報, 제23권 제6호, 1982. pp. 2-4
- _____. “한국목록분류법의 실상,” 圖書館學報(中央大學校 圖書館學會) 第4輯,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創設 20周年 紀念 特輯號. 1983. pp. 215-222
- _____. “한국어로 쓰인 자료의 서지적 정리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2차 국제한국학연구기관협의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1975년 7월; 일역판: 韓(東京, 韓國研究院), 第4卷 第1號, 1975. pp. 91-98; 우리말로는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도협월보, 제16권 제10호, 1975. pp. 9-12

- 崔達鉉. “大學圖書館의 目錄利用研究,” 圖書館學論集, 第9輯, 1982. pp. 241-266
- . “逐次刊行物의 基本記入選定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第4輯, 1977. pp. 211-236
-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3版. 記述 標目 올림指示篇.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 .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Edited by Michael Gorman and Paul W. Winkler.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 Ayres, F. H., et al. “Author versus Title; a Comparative Survey of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which the User Brings to the Library Catalogu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24, no. 4, 1968. pp. 266-272
- Cutter, Charles A.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Rewritten.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 Daily, Jay E. “Title Entry as Unit Entry,” Libriary Resources Technical Services, vol. 16, no. 4, 1972. pp. 433-444
- Domanovszky, A. Functions and Objects of Author and Title Cataloguing. München, Verlag Dokumentation, 1975
- Fuchs, Herman. Kommentar; zu den Instruktionen fur die alphabeticchen Kataloge der Preusischen Bibliotheken. 2., durchgesehene Auflag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8
- Gorman, Michael. “Changes in Cataloguing Codes; Rules for Entry and Heading”, Library Trends, vol. 25, no. 3, 1977. pp. 587-602

- _____. "The Current State of Standardization in the Cataloguing of Serial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pp. 301-313
- Hamdy, M. Nabil. The Concept of Main Entry as Represented in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3
- Hanson, J. C. M. A Comparative Study of Cataloging Rules Based on the Anglo-American Code of 19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 Hicks, Warren B. and Tillin, Alma M. Developing Multi-Media Libraries. New York, R. R. Bowker, 1970
- Hufford, Jon R. "Elements of the Bibliographic Record Used by Reference Staff Members at Three ARL Acade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52, no. 1, 1991. pp. 54-64
- Instruktionen fur die alphabetischen Kataloge der preuβischen Bibliotheken. vom 10. Mai 1899. zweite Ausgabe, unveränderter Nachdruck.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08. 영역판: The Prussian Instructions; Rules for the Alphabetical Catalogs of the Prussian Libraries. Translated from the Second Edition, Authorized August 10, 1908,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Andrew D. Osbor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38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Report.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81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SBD(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First Standard edition.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4. 국역판: 국제 표준서지기술법(단행본용). 국제 도서관협회연맹 제정; 리재철, 현규섭 역주. 표준 1판. 서울, 한 국도서관협회, 197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Statement of Publicat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Oct. 1961.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a Verona.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

Johnson, Richard D. "A Book Catalog at Standford,"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vol. 1, no. 1, 1968. p. 13-50

Kaltwasser, Franz Georg. "Entstehung, Strukturen und Anwendung der neuen Regeln fu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RAK), " Zeitschrift fu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s, vol. 21, 1974. pp. 1-22

—. "The New German 'Rules for Alphabetical Cataloguing (RAK)' and Thei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IFLA Journal, vol. 1, no. 4, 1975. pp. 276-284. 국역판: "獨逸語圈의 새 목錄規則(I, II)," 李丙洙譯, 國會圖書館報, 第15卷 第6號, 1978. pp. 24-29, 52; 國會圖書館報, 第15卷 第9號, 1978. pp. 67-75

Koel, Ake I. "Can the Problems of Corporate Authorship be Solved?"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8, no. 4, 1974. pp. 348-354

Lais, Rudolf.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Development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ternational Cataloguing, vol. 12, no. 3, 1983. pp. 27-35

Lubetzky, Seymour.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53

_____. "Titles; Fifth Column of the Catalog," Library Quarterly, vol. 11, 1941. pp. 412-430

Osborn, Andrew D. "Cataloging and Cataloging Code in Other Countries Today," Library Quarterly, vol. 26, 1956. pp. 276-285

Parker, Ralph H. "Book Catalog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8, no. 4, 1964. pp. 344-348

Pettee, Julia. "The Development of Authorship Entry and the Formulation of Authorship Rules as found in the Anglo-American Code," Library Quarterly vol. 6, 1936. pp. 270-290

Regeln fu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 RAK.
Autorisierte Ausgabe, unveränderter Nachdruck. Wiesbaden, Reichert, 1980

Simonton, Wesley. "Serial Cataloging Problems; Rules of Entry and Definition of Titl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pp. 294-300

Tait, James A. Authors and Titles; an Analytical Study of the Author Concept in Codes of Cataloguing Rules in the English Language, from that of the British Museum in 1841 to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1967. London, Archon Books, 1969

Tamberg, Nora. The Development of Uniform Bibliographic Principles as the Basis for Multi-National Cataloging Codes and Internationally Compatible Bibliographic Standards. University of Pittsburgh, 1981

Verona, Eva. "The Function of the Main Entry in the

Alphabetical Catalog; a Second Approach," Report, ICCP,
London, IFLA Committee of Cataloging, 1981. pp. 145-157

Weintraub, D. Kathryn. "Functions and Types of Entry; a Review
of Earlier Codes for Corporate Entry," Library Quarterly,
vol. 50, no. 2, 1980. pp. 225-241

Wynar, Bohdan S. Introductions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7th ed. by Arlene G. Taylor.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85